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KIND 사업개발 전략수립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1
3. 과업내용.....	1
4. 과업의 일반원칙.....	5
5. 과업 수행 방법.....	7
6. 과업성과품 제출.....	8
7. 보안대책.....	9
II. 예정공정표.....	11

I.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KIND 사업개발 전략수립

□ 과업 배경 및 목적 :

- 2기 경영진 취임 후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비전 2030 및 ‘23~’ 27년 KIND 중기 경영전략’ 이 수립되었으나, 정부의 경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개발 활동 시 적용할 **세부 실행전략(Implementation Business Strategy)** 수립이 필요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개발 조직과 시장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
-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사업환경, 글로벌 경쟁사 투자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기관 핵심역량 정의를 통해 상품별, 지역별, 유형별 **사업개발 전략 수립 및 과제 제시**
 -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한정 해당 내용은 KIND에서 최근 수행한 용역을 참고(용역자료 제공가능)하여 중복과업 최소화
- 중장기 사업목표(5개년) 및 내년도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 통한 **선순환적 경쟁력 제고 및 공공성 향상 기대**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3. 과업내용

□ 사업환경 분석(KIND에서 개발주 용역 중 유사부분 자료 공유가능)

- 해외 투자개발형 건설시장 상품/공종/지역별 중장기(5년) 사업환경 분석
 - 상품/공종/지역별 중장기 마켓트렌드, 시장규모, 발주형태 분석

- 주요 글로벌 발주처(정부, 공기업, 민간디벨로퍼) 동향
 - 관심 분야
 - 투자유치 방식
 - 선호 금융조달 구조
- 글로벌 PF 금융기관 동향
 - 금융제공 중점 분야
 - 지역 및 상품별 금융조달 방식/주요 참여자 조사
- 투자개발형 vs 도급형 시장규모 및 특징 분석
 - 지역별 시장규모 및 발주형태별 특성
 - 우리 기업 도급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현황
 - 우리기업의 투자개발형 시장에 참여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
 - 시공/원가경쟁력
 - 글로벌 파트너링 vs 팀코리아
 - 금융경쟁력
 - 사업추진방식(정부고시형, 민간제안형)
- 글로벌 선진 인프라투자사(SI, OI, FI) 및 정책(국부)펀드 투자 동향 및 전략 분석
 - 글로벌 선진 인프라투자사의 최근 투자실적, 패턴 및 금융조달 실제 사례 조사 및 성공 패턴 도출
 - KIND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해외 인프라펀드의 최근 투자실적, 패턴 및 Co-Investment/financing 실제 사례 조사 및 성공 패턴 도출
 - 유사 정책기관(미국 USIDFC 및 일본 JOIN)과의 경쟁력 분석

□ KIND 사업개발 경쟁력 분석

- KIND 보유 Deal Pipeline의 특성 분석
 - KIND 보유 Deal Pipeline내 Deal Sourcing 채널 분석
 - KIND 보유 Deal Pipeline내 상품/공종/지역별 포트폴리오, 성공원인, Sourcing시 개발수준, Sourcing 채널별 성공가능성 등 특성 분석
 - 사업개발비 분담
 - 이해관계자 협상 참여

- 금융주선 및 조달 참여
- 사업리스크 공유 수준
- 중도철회 프로젝트 원인분석

○ 현행 사업개발 및 투자규정 등 제약조건 분석

- 투자활성화 및 인프라 수출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KIND 사업개발 및 투자규정내 제약조건 분석
- 외부 환경(아국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따른 제약조건 분석
- 내부 환경(인력 및 조직 구성, 경영방침 등)에 따른 제약조건 분석

○ KIND 투자개발형사업 대외경쟁력 SWOT 분석

- ※ 용역사는 국내 투자개발형 사업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3회 이상 개최(회당 전문가 3인 이상)해야 하며, 역량 분석을 위한 KIND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을 1회 이상 개최

□ KIND 중기 경영전략 중 사업개발 전략과제 분석 및 ‘24~ ‘28년 조정 (Rolling) 보고(구체적인 성과지표 도출 포함)

○ 글로벌 협력플랫폼 고도화 전략과제 분석 및 Rolling

- G2G 협력가능 국가 조사 및 투자개발형 G2G 협력 표준모델 수립
- 선진 인프라 투자기관 해외거점 사업개발 활용 사례 및 운영방안 개선 Benchmarking
- 선진 인프라 투자기관 홍보전략 Benchmarking

○ One Team Korea 참여 활성화 전략과제 분석 및 Rolling

- 해외수주 활력제고를 위한 KIND역할 강화
 - 해외건설 수주액 제고를 위한 KIND 사업참여 포지션 검토
-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방식 검토
 - 타당성조사 사업화 성공사례의 KSF(Key Success Factor) 도출
- 인프라 공기업 투자개발형사업 참여 촉진
 - 인프라/발전 공기업간 협력사례 분석 및 표준 협력모델 수립
 - 인프라/발전 공기업간 협력시 제도적 제약사항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과제 분석 및 Rolling

- 채권/수익증권 투자 활성화
 - 채권/수익증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네트워크 확대방안
 -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 포지션 검토
 - 신종자본증권 등 투자다각화 방안
- 브라운필드 사업참여 확대
 - 브라운필드 사업의 순기능 검토
 - 브라운필드 사업의 해외수주연계 최적화 방안
- 정책펀드 투자 활성화
 - 정책펀드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투자 포지션 검토
 - 정책펀드 연계가능 주력 시장/상품/발주처 검토

□ KIND 사업개발 실행 Action Plan 도출

- 상품/지역별 맞춤형 사업개발 세부 실행전략 및 Action Plan 도출
 - 우리기업의 참여 관심도/가능성과 연계된 전략 상품/시장의 선정
 - 시장별, 상품별, 발주유형별(입찰/민간제안)에 따른 참여 실행전략 및 과제 도출
- Deal Sourcing 채널 고도화 세부 실행전략 및 Action Plan 도출
 - KIND 기투자승인 사례, Deal Pipeline 입수 경위, 우리기업의 BP를 분석한 KIND Deal Sourcing 체계 정의
 - 구축한 Deal Sourcing 체계에 따른 자원배분(조직·인력·예산) 계획 및 규정 제·개정 등 보완사항 도출
- 사업개발 규정, 프로세스, 조직 및 지원프로그램 개선 사항 도출
 - 글로벌 선진 인프라투자사 및 정책(국부)펀드 운영사 등을 참고로한 사업 개발 규정, 프로세스, 조직 및 지원프로그램 보완사항 도출
- 도출된 세부 실행전략 및 Action Plan별 목표/지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및 지표 조정
 - 향후 5개년 간 상품별, 투자형태별 투자목표액 산정
 - 투자 목표에 따른 적정 사업개발 및 사업관리 인력 산정

□ 실행전략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 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 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상 주요 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 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 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 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수행 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 수행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집행 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 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 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때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의 작성 방법, 양식, 활자 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 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기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 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 내용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3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 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 수행 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10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업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 결론 및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 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10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및 기타 참고자료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용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 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II. 예정공정표

항목		M	M+1	M+2	비고
1. 사업환경 분석					
2. KIND 사업개발 경쟁력 분석					
3. KIND 중기 경영전략 중 사업개발 전략과제 분석 및 '24~' 28년 조정(Rolling) 보고					
4. KIND 사업개발 실행 Action Plan 도출					
5. 성과품 작성					
보고회		착 수 보 고		중 간 보 고	최 종 보 고
과업 진도율	당기	30	40	30	
	누적	30	70	100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 수정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반영 가능